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가단512966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123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가단5129666 판결

전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6. 11. 22.

판결 선고 2017. 1. 1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28,483원 및 그 중 8,217,711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각 5,552,322원 및 그 중 각 5,478,474원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는 8,328,483원 및 그 중 8,217,711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5,552,322원 및 그 중 각 5,478,474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A, B,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33,129원 및 그 중 19,174,659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 B, C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9,433,129원 및 그 중 19,174,659원에 대한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경 F과, F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은 변제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위 이행일부터 연 15%이다.

나. F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5. 1. 23.까지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4. 30.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에게 그때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20,027,309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852,650원을 회수하였으며,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58,470원을 지출하였다.

다. F은 2010. 8. 24. 운전하여 가던 경운기가 도로 옆 하천변으로 추락·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한편 피고 A는, 2003. 11. 6.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망인이 2005. 11. 10. 사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 B, C(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A 등'이라고 한다)은 2010. 10. 4. 피고 D, E(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부동산[피고 A가 상속한 지분 3/14(망인 소유 지분 1/2 x 상속분 3/7) + 피고 B, C이 각 상속한 지분 합계 4/14(망인 소유 지분 1/2 x 상속분 2/7 x 2)] 중 각 1/2씩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피고 D 등에게 위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당시 당초

피고 A 명의로 되어 있던 1/2 지분도 함께 처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3, 4,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8,328,483원[19,433,129원(위 변제금 20,027,309원 - 회수금 852,650원 + 비용 258,470원) x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8,217,711원[19,174,659원(위 변제금 20,027,309원 - 회수금 852,650원) x 상속분 3/7]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9.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각 5,552,322원(위 19,433,129원 x 상속분 2/7) 및 그 중 5,478,474원(위 19,174,659원 x 상속분 2/7)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9.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 특레법상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 A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특레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등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는데 원고는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산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 등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0노단96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0. 12. 23. 피고 A 등의 2010. 11. 3.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 A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정승인 신고 이전인 2010. 10. 4.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미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한정승인 내지 이를 전제로 한 피고 A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D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 등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A 등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 D 등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기왕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D 등은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편 ① 피고 A 등과 피고 D 등은 당초 일면식도 없다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처음 만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비싸거나 저렴하여 비정상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피고 A 등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 등은 모자지간으로서 거주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도 매수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④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2008. 9. 1. 설정된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대출원금 9,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이외에는 다른 근저당권이나 기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가압류나 압류 또는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기입등기도 전혀 없었던 점, ⑤ 또한 당시 피고 D 등이 피고 A 등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당시 피고 D 등이 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외에 피고 A 등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거나 피고 A 등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D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매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 4, 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축탁 결과를 더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등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등기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다거나,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계약상 의무이행의 시기가 비정상적으로 급박하고 그에 반해 잔금 지급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약 한 달이 지나 모두 지급되었고 앞서 본 망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위 등기 경료 후 약 20일 후에야 말소되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시점과 위 등기 경료 시점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계약상 의무이행 시기가 다소 급박하고 소유권 이전 후에야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체결이나 그 내용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당시는 피고 A 등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망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가족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주거지를 빨리 처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위 매매계약상 잔금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저당권 말소가 늦어지게 된 것은 매수인인 피고 D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D 등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등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등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찬우

별지